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56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윤후덕·정성호·임오경

홍기원 • 이기헌 • 임미애

김정호 · 박희승 · 박 정

이병진 · 정준호 · 이연희

박수현 · 김영진 · 박민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6항).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6항 중 "위촉하여야"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로,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새로 시작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	6		
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u>위촉하여야</u> 하며, 그 보	<u>임명 또는 위촉하여야</u>		
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남</u>	사		
은 임기로 한다.	로 시작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